

[재]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(안)  
**검 토 보 고 서**

1. 안 건 명

-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(안)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8월 23일 (목)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- 2018년 8월 27일 (월)

4. 관련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5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때는 “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”라는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6.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현황

### 가. 운영현황

- 재단설립일 : 2014. 1. 1.
- 기본재산 : 107억원
- 직원 : 3명(사무국 직원 2명, 마포구 파견 직원 1명)
- 장학금 지급현황 (단위 : 백만원/명)

구분	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 6월
금액	1,320	323	297	284	273	143
인원	930	227	206	201	191	105

### 나. 시설현황

소재지	용도	면적(m2)	사용기간
마포중앙도서관 4층	사무실/ 이사장실	69.64	2017. 12. 22~ 현재

## 7. 검토의견

### ○ 본 동의안은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때는 “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”라는 규정에 따라 “마포인재육성장학 재단” 사무실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-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마포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구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, 장학사업을 수행하여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,
- 장학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마포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실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그러나 근거규정으로 제시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,
- 2016. 7. 12일자로 시행령에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구의회 동의없이 무상사용이 허가된 사항임. 따라서 정확한 근거와 구의회 동의없이 무상사용이 허가된 문제점은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